

『인천광역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11월 4일

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의 장

인천광역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판기 등의 우선 사업 대상자를 추가하고, 불필요한 규제사항 및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전면 개편 시행에 따른 수급자 명칭을 변경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상위법에 의한 대상자 범위 추가
 - 상위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의6 규정의 구체적 대상인 북한이탈주민을 추가

- 상위법에 의한 면적제한 규정 삭제
 - 매점 “15㎡이하의”의 면적제한 규정 삭제
- 불필요한 규제사항 정비
 - 법령의 위임 없이 “설치계약이 해지된 자는 3년간 재 신청할 수 없다”의 규정삭제
- 기초생활수급자 명칭변경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급여수급자”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1월 13일(금)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우편, 팩스 또는 이메일로 인천광역시의회의회장 (참조 : 시의회 문화복지전문위원실, 전화 032-440-6223, 팩스 032-440-8764, 이메일 hy0108@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 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주 소 : ○성 명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인천광역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공공시설 안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천광역시 공공시설 안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 설치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안에서 식료품·사무용품·신문 등 일상 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시에 우선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의 범위)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을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자치법』 제113조부터 115조까지에 따른 기관의 청사
2. 제1호에 따른 기관이 직접·위탁 관리하는 공공시설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의 청사와 그 공사·공단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제3조(사전공고) 제2조 각호에 따른 기관의 장(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은 제2조에 따른 공공시설물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을 설치할 때에는 20일전 인천광역시보나 해당 공공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사전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우선계약 대상자)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우선계약 대상자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이하 “장애인”이라 한다)
2. 「노인복지법」 제25조에 따른 노인(이하 “노인”이라 한다)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 가족 복지단체(이하 “한부모 가족”이라 한다)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결정된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이하 “독립유공자”라 한다)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결정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이하 “국가유공자”라 한다)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6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대상자(이하 “북한이탈주민”이라 한다)

제5조(신청) 제4조에 따른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우선계약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1.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 설치 계약 신청서(당해 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이 정하는 소정양식)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한다), 장애인, 노인, 한부모 가족,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등 우선 계약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제6조(우선계약) ① 시장 등은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일반인보다 우선하여 계약하도록 하여야 하며, 우선계약

순위는 별표와 같다.

- ② 제1항에 따른 우선 계약자가 동일 순위일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며 그 이외의 사항은 기관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기간은 3년 이내의 기간에서 각 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7조(사업자의 의무) 제6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자는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을 직접 관리하여야 하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장애등급이 2급 이상인 자는 대리인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기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계약의 해지) 시장 등은 설치 계약을 하여 운영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7조 사업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계약을 체결한 자가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을 1개월 이상 운영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를 태만히 하는 경우
3. 계약을 체결한 자가 사망한 경우
4. 기타 관련법령 및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제9조(사용료 등)설치에 따른 시설 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은 해당 기관의 재산관리규정 및 계약조건에 따른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이미 계약된 매점과 자동판매기 등은 이 조례에 의하여 계약된 것으로 본다.

[별표]

매점 및 자동 판매기 등의 우선 계약 순위 (제6조관련)

순위	장 애 인	노 인	한부모가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등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	북한이탈주민
1	장애등급이 1, 2급으로 수급자	70세 이상 노인으로 수급자	한부모 가족으로 수급자	독립유공자로 수급자	국가유공자로 수급자	북한이탈주민으로 수급자
2	장애등급이 3, 4급으로 수급자	65세부터 69세까지 노인으로 수급자	한부모 가족으로 수급자를 제외한 자	독립유공자로 수급자를 제외한 자	국가유공자로 수급자를 제외한 자	북한이탈주민으로 수급자를 제외한 자
3	장애등급이 5, 6급으로 수급자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 제 2조 (장애인의 정의) - 제42조 (생업지원) ☐ 노인복지법 - 제25조 (생업지원) ☐ 한부모가족지원법 - 제 4조 (정의) - 제15조 (공공시설에 매점 및 시설 설치)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제 6조 (등록및결정) - 제16조 2(생업지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 6조 (등록및결정) - 제68조 2(생업지원)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 제 26조3(생업지원)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7조 6(생업지원)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특이사항	“특이사항 없음”

관련법령 발췌사항

☐ 장애인복지법(일부개정 2015.6.22 법률 제13366호)

제42조(생업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소관 공공시설 안에 식료품·사무용품·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을 판매하는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할 때에는 장애인이 신청하면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장애인이 「[담배사업법](#)」에 따라 담배소매인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신청하면 그 장애인을 우선적으로 지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장애인이 우편법령에 따라 국내 우표류 판매업 계약 신청을 하면 우편관서는 그 장애인이 우선적으로 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위탁 또는 지정 등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직접 그 사업을 하여야 한다.

⑤제1항에 따른 설치 허가권자는 매점·자동판매기 설치를 허가하기 위하여 설치 장소와 판매할 물건의 종류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장애인에게 알리는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장애인복지법시행령(일부개정 2014.11.4 대통령령 25701호)

제27조(생업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이하 "국가등"이라 한다)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소관 공공시설에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운영을 장애인에게 허가하기 위하여 소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하려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7조제3항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라 수익계약의 방법으로 사용·수익자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09.7.27., 2013.4.22.>

② 제1항에서 "그 밖의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③ 국가등은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의 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적으로 허가할 수 있다.

1. 20세 이상으로서 세대주인 장애인
2. 20세 이상으로서 배우자가 세대주인 장애인

☐ 노인복지법(일부개정 2015.1.28 법률 13102호)

제25조(생업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공공시설안에 식료품·사무용품·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에는 65세 이상의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 한부모가족지원법(일부개정 2015.3.11 법률 13216호)

제15조(공공시설에 매점 및 시설 설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장은 그 공공시설에 각종 매점 및 시설의 설치를 허가하는 경우 이를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에 우선적으로 허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0.17.]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2015.2.3 법률 13196호)

제68조의2(생업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소관 공공시설 안에 식료품·사무용품·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의 운영이나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하는 경우 제63조에 따라 등록·결정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단체의 범위, 매점의 규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위탁을 받은 자는 중대한 질병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직접 그 사업에 종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3.28.]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2014.5.21 법률 12668호)

제16조의2(생업지원)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소관 공공시설에 식료품·사무용품·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 운영 또는 자동판매기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할 때 제63조에 따라 등록·결정된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나 위탁을 받은 자는 중대한 질병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직접 그 사업에 종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8.]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2014.5.28 법률 12683호)

제26조의3(생업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소관 공공시설에 편의사업 또는 편의시설의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26.]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 2014.11.24 대통령령 제25769호)

제47조의6(생업지원) **법 제26조의3**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소관 공공시설안의 편의사업 또는 편의시설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대상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장애인
2. 부자(父子)가정 또는 모자(母子)가정
3.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환자
4. 5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생활이 곤란한 사람

[전문개정 2010.9.27.]

[제47조의5에서 이동 <2014.2.11.>]

□ 장애인복지법(일부개정 2015.6.22 법률 제13366호)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①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②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2.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 ③ "장애인학대"란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2.10.22., 2015.6.22.>

□ 한부모가족지원법(일부개정 2015.3.11 법률 13216호)

제4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4.12., 2012.2.1., 2014.1.21.>

1. "모" 또는 "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아등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를 말한다.

가.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遺棄)된 자

나. 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다.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에 입소한 배우자 또는 병역복무 중인 배우자를 가진 사람

라. 미혼자{ 사실혼(事實婚)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

1의2. "청소년 **한부모**"란 24세 이하의 모 또는 부를 말한다.

2. "**한부모가족**"이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한다.

3. "모자가족"이란 모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世代員)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인 가족을 말한다.

4. "부자가족"이란 부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인 가족을 말한다.

5. "아동"이란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말하되,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을 말한다)의 자를 말한다.

6. "지원기관"이란 이 법에 따른 지원을 행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7. "**한부모가족복지단체**"란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7.10.17.]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2015.2.3 법률 13196호)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1. 순국선열: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에 따른 순국선열
2. 애국지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애국지사
3. 전몰군경(戰歿軍警):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4. 전상군경(戰傷軍警):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퇴역·면역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퇴직(면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사람(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이하 "상이등급"이라 한다)으로 판정된 사람
5. 순직군경(殉職軍警):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6. 공상군경(公傷軍警):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7. 무공수훈자(武功受勳者): 무공훈장(武功勳章)을 받은 사람.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 무공훈장을 받은 경우에는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만 해당한다.
8. 보국수훈자(保國受勳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군인으로서 보국훈장을 받고 전역한 사람
 - 나. 군인 외의 사람으로서 간첩체포, 무기개발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이하 "간첩체포등의 사유"라 한다)로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 간첩체포등의 사유로 보국훈장을 받은 경우에는 퇴직한 사람만 해당한다.
9. 6·25참전 제일학도의용군인(在日學徒義勇軍人)(이하 "제일학도의용군인"이라 한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본에 거주하던 사람으로서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의 사이에 국군이나 유엔군에 지원 입대하여 6·25전쟁에 참전하고 제대한 사람(과면된 사람이나 형을 선고받고 제대된 사람은 제외한다)
10.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 나.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11. 4·19혁명사망자: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사망한 사람
12. 4·19혁명부상자: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13. 4·19혁명공로자: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한 사람 중 제11호와 제12호에 해당

- 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건국포장(建國褒章)을 받은 사람
14. 순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15. 공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16.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이하 "특별공로순직자"라 한다):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그 공로와 관련되어 순직한 사람으로서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으로 의결된 사람
 17.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이하 "특별공로상이자"라 한다):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그 공로와 관련되어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되어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으로 의결된 사람
 18.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이하 "특별공로자"라 한다):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제16호와 제17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으로 의결된 사람
- ②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14호 및 제15호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의 범위
 2.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의 관련 정도
 3. 사망하거나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게 된 경위 및 본인 과실의 유무와 정도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순국선열·애국지사의 예우에 관하여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다.
-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0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예우에 관하여는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다.
-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0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지원에 관하여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다.
- ⑥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14호 또는 제15호에 따른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으면 제1항 및 제6조에 따라 등록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서 제외한다.
1.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거나 관련 법령 또는 소속 상관의 명령을 현저히 위반하여 발생한 경우
 2. 공무를 이탈한 상태에서의 사고나 재해로 인한 경우
 3. 장난·싸움 등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사적(私的)인 행위가 원인이 된 경우
- [전문개정 2011.9.15.]
- 제5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①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3.28., 2011.9.15.>

1. 배우자
2. 자녀

3. 부모
 4. 성년인 직계비속(直系卑屬)이 없는 조부모
 5. 60세 미만의 직계존속(直系尊屬)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弟妹)
 - ② 제1항제1호의 배우자의 경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다만, 배우자 및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 국가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 후 그 국가유공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1.9.15.>
 - ③ 제1항제2호의 자녀의 경우, 양자(養子)는 국가유공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사람 1명만을 자녀로 본다. <개정 2008.3.28., 2011.9.15.>
 - ④ 제1항제3호의 부모의 경우, 생부 또는 생모 외에 국가유공자를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실이 있는 부 또는 모의 배우자가 있는 때에는 국가유공자를 주로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람 1명을 부 또는 모로 본다. <개정 2008.3.28., 2011.9.15.>
 - ⑤ 제1항제4호의 조부모의 경우, 성년인 직계비속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의무복무 중인 경우에는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1.9.15., 2013.6.4.>
 1. 「병역법」 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입영된 현역병(본인이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을 포함한다)
 2. 「병역법」 제22조에 따라 소집된 상근예비역
 3. 「병역법」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전환복무된 경비교도, 전투경찰순경 및 의무소방원
 4. 「병역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
 - ⑥ 제1항제5호의 미성년 제매의 경우,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있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거나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의무복무 중인 경우에는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8.3.28., 2011.9.15.>
 - ⑦ 삭제 <1994.12.31.>
 - ⑧ 삭제 <2000.12.30.>
- [제목개정 2008.3.28., 2011.9.15.]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4.5.21 법률 12668호)

- 제4조(적용 대상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1. 순국선열: 일제의 국권침탈(國權侵奪)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하다가 그 반대나 항거로 인하여 순국한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建國勳章)·건국포장(建國褒章)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
 2. 애국지사: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

- 제4조의2(가족관계 등록 창설 등) ①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독립**유공자 중 구호적 없이 사망한 사람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족관계 등록 창설을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가족관계 등록 창설이 된 **독립**유공자의 자와 그 직계비속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독립**유공자의 가족관계 등록 창설이 된 것을 안 날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2.6.]
- 제5조(유족 등의 범위) ①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는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2.6., 2012.2.17.>
1.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다만, 배우자 및 사실상의 배우자가 **독립**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事實婚) 후 그 **독립**유공자가 아닌 다른 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제외한다)
 2. 자녀
 3. 손자녀(孫子女). 다만, **독립**유공자의 유족으로 최초로 등록할 당시 이미 자녀 및 손자녀까지 사망한 경우에는 **독립**유공자의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 중 1명을 손자녀로 본다.
 4. 며느리로서 1945년 8월 14일 이전에 구호적에 기재된 자
 - ② 제1항제2호의 자녀의 경우, 양자(養子)는 **독립**유공자가 직계비속(直系卑屬)이 없어 입양한 자 1명만을 자녀로 본다. 다만,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입양된 양자의 경우에는 **독립**유공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直系尊屬)을 부양한 사실이 있는 자로 한정한다.
 - ③ 제1항제3호의 손자녀의 경우, **독립**유공자 직계비속의 양자는 그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자 1명만을 손자녀로 본다. 다만,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입양된 자의 경우에는 **독립**유공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을 부양한 사실이 있는 자로 한정한다.
 - ④ 제1항제4호의 며느리의 경우, **제12조**에 따른 보상금(報償金)을 받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유족이 없어야 하되, 해당자가 2명 이상이면 그 남편의 보상금 지급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先順位者) 1명으로 한정한다.
- [전문개정 2008.3.28.]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4.5.28 법률 12683호)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2. "보호대상자"란 이 법에 따라 보호 및 지원을 받는 **북한**이탈주민을 말한다.
 3. "정착지원시설"이란 보호대상자의 보호 및 정착지원을 위하여 **제10조제1항**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4. "보호금품"이란 이 법에 따라 보호대상자에게 지급하거나 빌려주는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한다.
- [전문개정 2010.3.26.]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일부개정 2015.1.20 법률 13017호)

- 제25조(사용·수익허가의 취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0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을 [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2.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4.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5. [제22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수익을 허가한 행정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게 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에 그 취소로 인하여 해당 허가를 받은 자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한 경우 그 행정재산이 기부채납된 행정재산으로서 [제2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이를 사용·수익하고 있는 자가 있을 때에는 그 사용·수익자에게 취소의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26.]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4.11.19 법률 12844호)

제30조의2(계약의 해제·해지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제15조제3항](#)에 따라 계약보증금 또는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하는 경우

2. [제30조](#)에 따른 지연배상금의 징수사유가 발생하고 그 금액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입찰과정에서 거짓 서류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낙찰을 받은 경우

4. 입찰, 수의계약 및 계약 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 등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례, 증여, 금품·향응 제공을 하는 등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5.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담당자의 이행 촉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6. 계약상대자의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사업 또는 영업에 관한 등록·인가·허가 등의 취소, 그 밖의 사유로 계약 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그 밖에 계약 내용에 포함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하여야 하고, 같은 항 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1. 다른 법률에서 낙찰자 결정의 취소 또는 계약의 해제·해지를 특별히 금지한 경우

2.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면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손해가 발생하는 등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3.8.6.]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 2015.6.4 법률 제12738호)

제113조(직속기관)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하면 대통령령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자치경찰기관(제주특별자치도에 한한다), 소방기관,

교육훈련기관, 보건진료기관, 시험연구기관 및 중소기업지도기관 등을 직속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114조(사업소) 지방자치단체는 특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115조(출장소) 지방자치단체는 원격지 주민의 편의와 특정지역의 개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됨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

4. 작성자

- 보건복지국 장애인복지과장 김 중 권